

허위보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신문에 대해서만 소제기전 서면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도록 한 법률은,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주헌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WHITE v. MANCHESTER ENTERPRISE INC.
24 Med. L. Rptr. 1530
(미연방 동부 켄터키 지방법원, 1996년 1월)

사건개요

1. 이 사건 원고인 Charlotte White 양은 1993년 'Native America Inc.'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미국 전역에 걸쳐서 원주민 주술가들의 단체를 조직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화이트 양은 플로리다주의 Hialeah에서 처음으로 주술가들의 회합을 개최하였고 곧 이어서 1993년 봄에 켄터키주의 맨체스터에서 2차 회합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다니며 Hialeah에서의 1차 주술가 회합 때문에 잠깐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실을 실은 신문을 발행하였다. 그 기사에는 원고가 1월에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회합에 초청한 연예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75,000 달러의 빚 때문에 도피 중이며 자신이 지급해야 할 호텔비용을 Jimmy Boil Kial이라는 한 원주민에게 부담지우기도 했다고 쓰여 있었고, 사실에는 주최측에서 플로리다에서의 1차 회합시 행사에 참여한 미국 원주민들과 그들이 묵은 호텔측을 동시에 기망하였다고 쓰여있었다. 그러므로 맨체스터에서의 2차 회합이 진행된다면 누군가가 또다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이번 행사는 개최되지 못할 것이며,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원주민들이 거의 안 나타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비록 Hialeah에서의 행사기간 동안 비가 많이 와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교도소에 갔다 왔으며, 현재 빚 때문에 도피 중에 있다는 등의 기사와 사실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3. 원고는 1993년 8월 2일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현실적 손해 뿐만 아니라 소위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함께 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면서 약식판결을 구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받아내었다. 켄터키 개정주법 411.051에 의하면 신문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소제기 이전에 신문사를 상대로 서면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 제기 이후인 11월 9일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약식판결의 취소를 구해 온 것이다.

판결요지

1. 민사나 형사소송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목적을 가진 법률을 제정하거나, 일반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주헌법 59조의 취지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2. 주헌법이 금지하는 특별입법이란, 합리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일부에게 혜택을 주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차별적 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하려면, 첫째로 그것이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그 차별을 뒷받침하는 분명하고도 자연스러운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3.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주법률 411.051 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활자 매체 중에서 잡지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신문의 경우에만 명예훼손보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자의적인 위헌입법 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판결이유(요약)

1. 주헌법 14, 54, 241 조의 위반 여부

원고는 문제된 주법률 411.051 이 주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절차 이용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용하는 주헌법 14, 54, 241 조가 소송제기를 제한하거나 방해 하는 입법을 금지 하는 취지임은 분명하지만 주헌법 14 조는 오로지 적법 절차와 일반적인 사법이용권에 관한 것이고, 주헌법 54 조는 사람이나 재물에 대하여 물리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주헌법 241 조 역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헌법규정들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주헌법 59 조에의 위반 여부

주헌법 59 조는 『주의 특별입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회가 민사나 형사소송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목적을 가진 법률을 제정하거나, 일반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무제한한 입법권의 견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부와 권력을 향유하는 계층이 그 부와 권력을 이유로 어떠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Kentucky Harlan Coal Co. v. Holmes, 872 S.W. 2d446Ky. 1994). 여기서 금지하는 특별입법이란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그 결과 다른 사람 등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차별적 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하려면, 첫째로 그것이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둘째로 그 차별을 뒷받침하는 분명하고도 자연스러운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Perkins v. Northeastern Log Homes, 808 S.W. 2d 809(1991)에서는 건물 등 부동산에 부합된 건축자재로 인한 피해에 관한 소송을 공사종료 후 7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7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똑같은 건축자재가 동산에 쓰인 경우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쓰인 경우에 차별을 두는 것인데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판결의 논거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주법률 411.051 은 신문의 경우에만 그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혜택은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은 같은 활자매체에 속하는 잡지 등에는 주어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일견 보아도 불합리하다. 만일 신문과 잡지가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가정할 때 피해자가사전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두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면 한쪽 매체만이 책임을 면제 받는 결과가 되어 그 불합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원래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잡지에서 인용하여 다시 취급한 경우에도 신문만이 책임을 면제 받는 상황이 되면 그 불합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활자매체를 방송매체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종류개념으로 본다면 주법은 활자매체에 속하는 것들간에 차별을 두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만일 범위를 좁혀서 신문이라는 것을 하나의 종류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차별을 둔 것이라고 강변한다면, 신문을 잡지, 뉴스레터 등과 구별하여 다른 종류로 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역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법 411.051 은 주헌법 59 조가 금하는 특별입법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위헌법률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약식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사전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 한다.